

제 306 회

제 1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2 년 12 월 2 일 (금) 10시 30분

## 의 사 일 정 (제1차 회의)

1.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천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
17.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 부 의 안 건

- |  |    |
|--|----|
| 1.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아진의원외5인)                  | 2  |
| 2.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아진의원외4인)  | 2  |
| 3. 서천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섭의원외4인)            | 8  |
| 4.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의원외4인)           | 12 |
| 5.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석의원외3인)      | 14 |
| 6.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희의원외2인)                 | 2  |
| 7.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2  |
| 8.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
| 9.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2 |
| 10.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
| 11.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
| 12. 서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
| 13.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
|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14 |
|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14 |
| 16.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2  |
| 17.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
| 18.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
| 19.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
| 20.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
| 2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학권

의사팀장 김학권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11월 25일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아진의원외5인) (10시30분)

○위원장 이강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아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김아진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아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아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아진의원외4인) (10시35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아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김아진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개정의 이유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이게 보면 14조 2항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꼭 14조 2항만 따라야 한다는

지침이 있을까요?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김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도 대행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던 것을 대행으로 용어만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지혜 위원

예,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용어만 바꾼다고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14조 2항도 있고 1항도 있습니다. 14조 1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법규 중에 하나가 다음 항 이후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자체장이 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였던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는 법률적인 책임이 운영자, 즉 사업자에게 있고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저희가 대행으로 할 때에는 모두 법률적인 책임이 지자체장, 그러니까 군청에 있는 것으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용어만 변경한다고 하면 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게 2020년 4월 3일에 재정했던 조례였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바꾸시는 건데, 2020년 4월 3일 조례 제2651호에 있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토론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민들의 만족도나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 과연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과 더불어 평가 또한 현재 조례에서 정했던 민간용역기관의 평가를 대행하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굳이 바뀌야 하는 건가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요.

23조 신설조항 역시 서천군 지역여건과는 좀 먼 것 같습니다. 굳이 대행실적평가 기준적용지침을 이걸 준용하지 않아야 신규사업자가 있을 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개설하는 23조 신설을 저희

들이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설조항이 어찌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김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위원님 요지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대행으로 바꾸냐,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지혜 위원

아니요, 저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아진 위원

기준에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였고, 법령에서 위임한 대로 우리는 조례를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생활폐기물 관련사업은 대행으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영 아니면 대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으로 이 법령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이번에 시행절차에 맞춰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된 안입니다.

○이지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강선

잠깐만요, 이지혜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 안드렸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원섭의원외4인) (10시4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섭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김원섭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섭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섭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선의의원외4인) (10시50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사항으

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위한 규정, 이것은 환경부 고시 시행령 2022년 8월 31일 구체적인 원가계산을 고시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목별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경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본조례로도 충분히 계약종료 후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항료 청구, 사용금액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원가계산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위법 제14조의 2에서도 명시되어져 있듯이 서천군조례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라고도 명시하여 주고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을 폐기물의 목적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조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맨 마지막 조항에서,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항수수료집행에 대한 미화원의 임금 적정 지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조례에서 해당사안이 문제가 없게끔 되어져 있는 사안을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조례에 경제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더 14조의 2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한다 했으면 14조 2에서도 보면 지방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고 이거를 용도, 뭐 14조의 2에 3을 보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균의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과징금을 폐기물 목적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적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다른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어쨌든 현재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사용목적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달리 수정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지혜 위원

아니요. 32페이지에 보면 대행이 종료된, 임금 적성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의 것에서 더 복잡하고 굳이 우리가 따라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는데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여기에 목적사업에 쓰여지도록 차라리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강선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강선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토론 시 잠시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8쪽 평가의 실시부분입니다. 평가의 실시 기존의 조례에서는 단서가 있었는데요.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보면 고객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의해 평가를 시행해야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또 능률과 효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환경부 지침에도 고객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 지역 주민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해당단서가 삭제되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술(전문위원석에서)

이지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법제처에

서 법률위반사항 가능성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환경부 지침 말씀해 주신 부분도 민간용역기관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이 지침에는 한국폐기물협회 있던가요, 그 한 군데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제처하고 논의하고 환경보호과와 법무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삭제한 부분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강선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님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지혜 위원

일단 법제처에서 그렇게 권고의 의견으로 왔다면 저희 모든 의원님들도 해당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만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정보의 제공이 온전치 않게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강선

예,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혜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의결을 해야되는 사안이니깐요, 의문을 남기는 것보단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강선

말씀 다 하셨나요?

#### ○이지혜 위원

아니요,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강선

예, 말씀하세요.

#### ○이지혜 위원

또 한 가지, 23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조를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폐기물수집 운반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사선, 의료, 생활폐기물 이렇게 있는데, 방사선은 국가에서 하고 의료폐기물은 특수, 생활폐기물 지금 저희가 다루는 생활폐기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3자 계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중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에다가 가져다 주는 일을 해서 처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23조에 준용하는 이 사항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라고 이 조항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신설 조항이 군내에 다른 여러업체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경력이 없거나 실적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이거에 이제 아예 이거를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 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생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것이 23조라고 사료됩니다.

하여 23조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22조 그다음에 23조는 기존에 되도 신설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의회에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강선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부터 23조는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대행업체, 대행업무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이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니까 진입장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입을 한 업체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환경부지침이기도 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접근이라고 보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게 8쪽. 이 단서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라고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회의가 정말 원활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 누구의 말씀이든 이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굳이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정말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당장 필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발언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로 우리가 좀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전문위원님이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주시면 확인을 하고...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김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법제처 검토 후에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삭제권고가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하더라도 어겨서 다시 살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이지혜 위원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8조와 관련하여 평가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평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 그 조항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강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침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58조의 2에 따른 한국

폐기물,

○이지혜 위원

그거 말고요. 한국폐기물 그거 말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8-2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평가기준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평가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당사안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선

11조에 보면 평가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장평가단도 포함하고 그렇게 다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이지혜 위원

현장평가단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행실적 평가기준해서 평가를 할 때를 말씀용, 대행실적 평가.

○위원장 이강선

지침이 있지 않나요?

○이지혜 위원

어디예요?

○위원장 이강선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다 담지 않지요. 그건 이미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담당부서가 임의대로 평가지침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준용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혜 위원

그 해당사안이 우리 조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입니다. 저희 세부조례사항들을 살펴보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계획이라든지 평가자료를 어떻게 요청하고 현장평가는 어떻게 하고 평가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할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평가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대행실적평가에 대한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실적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14조 제8항에도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해당사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김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23조 준용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라고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다른 모든 우리 조례 조항을 보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행실적 평가에 대해서도 제목을 달아주시고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여 주시고 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아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므로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에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거수)

다음은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홍성희위원 거수)

표결을 종료하고 표결 집계를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찬성 김아진 위원님, 홍성희 위원님 2명이 찬성하셨고요. 반대 이지혜위원님 1명 반대하셨습니다. 기권 김원섭 위원님, 이강선 위원님, 한경석 위원님 3명이 기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아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석의원외3인) (13시36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경석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한경석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경석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경석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희의원외2인) (13시3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희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홍성희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본 안건뿐만 아니라 여러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너무 촉박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발의할 때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과 주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발의가 진행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회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회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44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이지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나면 위원회 제척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안도 좀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타 지자체들 대다수의 사례에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조항도 같이 포함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면 그 조항도 같이 넣어주셔서 조례가 좀 더 완성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은 9쪽에 보면 법 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지혜 위원

아니요, 거기에는 임기하고 남은 임기로 다른 사람 대체됐을 때는 그것만 있지 어떨 때에 제척이 되고 어떨 때에 해촉이 된다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 내용들은 서천군위원회 관련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굳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 다.

○이지혜 위원

그래서 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그렇습니다.

○이지혜 위원

그럼 포상 인센티브 규칙도,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규칙에 담든지 이렇

게 하겠습니다.

○이지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석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한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위원

한경석입니다.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조례에 답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혜순

예, 그거는 이제 여기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거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4쪽 제6조 1항에 2호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육이 출산 관련해서 결혼·임신·출산, 출산 전까지 그리고 출산에서 양육하고 보육이 교육 이전에 보육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전 단계는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혜순

여기보면 양육과 교육이 있는데요. 보육이란 개념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고, 양육이라고 하면 거기에 육아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우리는 분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은 교육파트로 접근이 되는데 그 이전에 어린이집이나 보육파트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연히 좀 다르게 양육은 키워가는 어떤 과정들이고 그 안에 보육이라고 하는 어쨌든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보육도 포함되는 것이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혜순

저는 이제 양육이란 애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양육은 키우고, 보육이란 건 그 속에 교육이란 기능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애가 바른 어떤 건강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절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놓으시겠다면...

○위원장 이강선

이건 막연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육에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면 굳이 양육, 교육을 분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양육, 보육, 교육 이것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의미를 갖고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정혜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보육을 명시화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에 아까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장선임, 위촉방법 이런 것들 또 이 위원회도 그 위원회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혜순

10쪽에 보면 9조 2항에 있습니다, 법에.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1호에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호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호에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격하고 위원장에 대한 임용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서 굳이 법이 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5년 이내에서 임기만 정하고 다른 것들은 서천군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준용하는 걸로 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예,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서천군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부여를 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고, 또 저희 주거

비 지급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어떤 어떤 일정한 조건을 해당하면 이렇게 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의 여러 사례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임산부들의 교통비를 지원을 한다든지라는 좀 더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타 지역 사례를 더 연찬을 해가지고 추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정을 통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출산에 대해서 하려면 좀 더 촘촘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공감합니다.

○이지혜 위원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해보셔서 어차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조례의 전부 개정이지 않아요. 전부를 개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혜택들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위원

해당사항, 말씀드린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수 사회복지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

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사회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수 사회복지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장입니다.

28쪽 제7조에 국제교류의 활성화 조항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서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를 보면 견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견학이요?

○위원장 이강선

예. 그래서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 모든 부분은 다 일치하는데 견학은 31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견학을 포함시킨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일단은 저희가 세계보건기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례를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 3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통해서 혹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을 때 한번 견학을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기회가

닿는다면 견학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어서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본법 취지는 어쨌든 정보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보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정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요. 정보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어쩌면은 이런 정보교환이 견학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견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명시하는 것은 어쩌면 견학이라고 하는 게 외유성견학 이런 것들이 솔직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외유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연구목적이기도 하고 이런데, 굳이 견학을 이렇게 명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견학이 담아졌다 해서 꼭 가야 되는 사항도 아닐 테고, 혹시 또 견학이란 문구를 담지 않았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담아 놓으면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사업추진에 효과도 있지 않을까해서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좀 달리 표현하자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해외견학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할 때도 다시 또 예산편성할 때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 견학을 담았다고 무조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담아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예산심의는 예산심의 문제고, 그걸 떠나서 별개로 여기에 견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본적으로 열려있

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 그 목적이 정말 100% 부합되는 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절반에 목적이 부합될 수도 있고 한데 견학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면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당위성의 조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일단 저희 군도 새로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보고 혹시 견학도 갔나 그런 것까지는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조례에는 담기는 하였으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충분히 정보교환이나 이런 내용 속에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제교류가 됩니까. 어쨌든 교류 그 자체가 방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견학이라고 하는 다른 통로 내지는 방법을 굳이 여기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럼 이 부분 삭제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예, 견학조례에 담지 않아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강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석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한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위원**

한경석입니다.

동 7조 말미에 보면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당위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강제할 필요까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강선 위원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국제교류는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국제교류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또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를 전개할 수 있다,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한경석 위원

상위법상에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 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을 우리가 준용을 해야된다는 전제하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

조 제목이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를 하려면 가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려면 견학을 가야죠.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조항이 차라리 그것을 안 하려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딱 말씀드리려 했는데, 7조의 목적이 국제교류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이상입니다.

○이지혜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지금처럼 해당사안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다른 조항으로 국제교류 활성화가 아닌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WHO 등 국제기

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다른 조항을 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을 국제교류의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려면 아까 김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되 다른 데에서 국제교류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견학은 빠져있고 견학이라는 단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어를 빼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 자치법규로 7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견학이라고 넣은 곳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또 김아진 부의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문제가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던 견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삭제를 하시거나 완화를 하시거나 좋은 방안으로 팀장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저희가 견학이라는 단어를 빠졌다고 교류활성화를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일단 견학이란 문구 때문에 조례사항을 남겨둔다면 견학이라는 문구를 빼고도 활성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3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형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형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제출) (15시5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경숙**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6시0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숙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경숙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경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첫 번째, 비인음성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한산음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6시0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열 관광축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관광축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열 관광축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축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17.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16시14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신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신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2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26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정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큰솔**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정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별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6시30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별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숙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 제안설명 ---

○위원장 이강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술

---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석 의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위원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운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효율성이 매우 낮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시설과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은 일정하게 투입되는데도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더라 하는 부분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떡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이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개선안으로는 평일에는 청년동아리들이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휴일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관광기능을 도입하는 것, 또 관광기능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그런 공간 운영하는 부분까지를 고민하였고 개선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한경석 위원

그래요? 이 미곡창고가 갖는 역사성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한경석 위원

우리 지역의 향토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역사성과 어떤 향토성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금까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그렇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미곡창고와 함께 번성했던 중고제 판소리라든가 이러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문화를 향유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동안에는 그런 중고제 판소리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위원**

강 건너 군산시에 보니까 미곡창고도 있고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큰 창고들을 크게 리모델링하지 않고 가급적 원형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바로 이웃하고 있는 미곡창고 또 적산창고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의 향토성과 역사성 또 이런 정체성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혜 의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이지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입니다.

장항에는 김창룡선생님의 생가지가 있죠. 방금 한 위원님께서 중고제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장항에는 우리 중고제의 큰 대가이신 김창룡 선생님 생가지도 있고 또 지금 장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국악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배운 국악을 이런 미곡창고에서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까 평일에는 청년이나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또 휴일에도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연유는 장항읍민들의 많은 수요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또 미곡창고든지 어디든지 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달라”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해당 의견은 간담회에서도 소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알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항읍민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문화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예술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명사들... 여기 보면 휴일에는 공연이나 전시 등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연전시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저희들 예산에는 그런 프로그램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지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함께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동백 중고제 해서 저희가 이미지 찾기 용역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한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민간위탁을 하실 때에 그런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보심이 어떨지 우리 소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여쭙어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운영기능개선 안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공연전시부분을 사실은 그동안에 도시탐험역이 내년 1월 1일자로 휴관하기 때문에 도시탐험역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공연이나 전시 등을 미곡창고로 옮겨와서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곡창고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미곡창고만의 정체성을 찾는 거고 그런 문화시설 간의 중복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희 의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홍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위원**

시간제 1명이 다시 채용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홍성희 의원**

어느 때 그분이 출근하고 어느 때 퇴근하는 시간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간제를 예산을 9개월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곡창고 현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휴일근무나 그런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적정하게 처우를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야간부분도 야간에도 일정부분 저녁 6시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되 이 부분은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수탁기관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일에 이런 야간근무를 할 것인지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간근무가 있는 요일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전에는 저녁 야간에 대관이 가능했다는데 지금 현재는 대관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간혹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으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장입니다.

미곡창고 지금 공식명칭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이죠?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동안에 저희가 본 사업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곳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문화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선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느냐. 쉽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곳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과 문화를 생산하고 창작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미곡창고는 어떤 시설이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과거 미곡창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수탈해 가고 있는 쌀을 그곳에 저장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우리 미곡창고와 문화예술 창작공간 그것이 전통문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견문쥰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꼭 부합된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그러한 우리의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강선

정체성이라기보다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을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런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야간근무가 지금 여기 조직운명을 보면 4명이라고, 올해까지죠, 12월까지 2명.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 해서 2인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의 계획은 1팀 4명이라고 했어요. 센터장 1명, 직원 2명, 시간제 1명. 그래서 시간제 1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근무죠? 몇 개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금 저희는 원가에는 9개월로 반영을 했고요. 근무시간은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할지 아니면 오후에 1시부터 밤 9시까지 할지는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탄력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운영인력에 포함되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운영인력에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런데 왜, 여기 운영인력에 포함됐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인력은 운영인력 대로 이렇게 조직구성을 해야지 운영인력도 아니면서 비상근에 센터장이 여기에 운영인력으로 1팀 4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옳은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선

옳지 않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하나하나가 꼼꼼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의회의 이야기는 결국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그리고 9개월 시간제를 통해서 야간근무 하게 하고 그러면 그 시간제 근로자가 거기도 연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

게 하면 결국 기존에 직원이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시간을 대신 대체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간외 근무 어떻게 산출이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지난번 원가산정 용역 보고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강선

시간외 근무수당 9,836원씩 4시간, 월 4시간 해서 12개월. 그렇게 지금 산출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 수탁운영자들이 정말 합리적인 업무를 집행하게 이렇게 산출했는지, 그 조건이, 저는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좋은 수탁운영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지 그 취지, 지금 바라는 기대치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동의 한 이유가 이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구조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을 했는데 이번에 동의안 제출한 것은 지난번 제출한 동의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난번 동의안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부동의한 동의안을 또 똑같이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제출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금액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저희는 제수당 쪽에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상여금과 급식비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뭐 어딜 늘린 것이 아니라 항목이 늘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던 것

을 이렇게 항목을 하나 생산해서 거기에 빼서 채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다른 내용이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우리가 산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추가했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계산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런데 왜 전혀 개선 보완 이런 거 없이 똑같은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난 번 임시회 때 부동의 된 안을 다시 한번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2023년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장항에 있는 시설들의 휴관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휴관을 하게 된다고 치면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점 때문에 죄송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주민들의 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수탁운영자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탁운영을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꼭 그런 의미로 다시 올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선

결과는 그렇잖아요.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이 어쨌든

표현이 되고 그것이 그 대상인 수탁운영자든 아니면 주민이든, 주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운영자들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수탁운영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열정으로 희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 대해서 어렵게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꼭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동의를 해 주기를 바라서 물론 제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동의를 하기를 저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도 있고, 또 그런 좋은 조건에서 이런 민간위탁이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본위원장의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충족을 안 시키고 한 부분만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수당 등 여러 가지 보수 규정을 지역재단 보수규정 지난번에도 어쨌든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왜 지역재단 보수 규정을 따르고 또 어떤 부분은 제조부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부분 뭐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는 이걸 쓰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지금 원가산출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완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

**○위원장 이강선**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 동

의안이 부동의가 될 경우에, 물론 수탁기관의 그러한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서천군민들의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전을 올렸으므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이 건은 지금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점차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점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수탁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저희 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개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거기서 조율이 안 되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정말 불합리한지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분명히 저희 쪽에 건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 이강선**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 협약서 안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어떻게 할지 그 협약서 안이 있어야 이 민간위탁 동의에 어떻게 어떻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보통은 협약서 안이 함께 제출이 되는 걸로 지금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향후 운영개선 관리계획안을 보면 ‘관 주도’ 아니, 첫 번째 1번에 135쪽을 보면 ‘관 주도 수탁운영 역량강화교육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군의 어떤 노력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 역량강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런데 이걸 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저는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사  
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도한 표현을 썼  
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가 수탁기관이 자유의지로 그런 역량강화교육  
을 추진을 한다면 저희가 굳이 관주도  
적인 역량강화교육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위원장 이강선

이게 이런 예산들이 한 2,000만 원인가 계획  
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 예산이 여기 시설들의 운영비에 운영예  
산에 포함돼서 역량강화 이런 비용이 사용되  
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그  
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서  
들어가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사업계획서  
에 들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뭐 결정적인 어떤 사항은 아니니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  
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  
고 또 수탁자도 그 의견을 받아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거기에서 함께 군이 거  
기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함께 좋은 아이디어  
를 서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탁운영자들은  
잘 몰라, 잘 못할 거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  
로 이렇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행  
을 하겠다 이런 방식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조  
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  
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하고 운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전향적으로 저는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  
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뭐 3년 동안 가능한 것인지  
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  
이 상태로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  
다. 그래서 그 의지가 있느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동의를 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  
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또 반영  
하고 수탁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선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  
습니까? 지금 이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  
고서 그곳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또 행정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또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 또 수탁운영  
자가 바라보는 시각 각기 다릅니다. 그것을 중  
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할 때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전체  
취합하는 여론도 그렇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시각도 중요합니  
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파악하서  
서 더 좋은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  
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석 위원

(거 수)

○위원장 이강선

한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듯이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그 인력들 인건비에 대한 그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해서 공공시설사업소 독자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축제과 등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표준 테이블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총괄부서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리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문화예술계의 임금 테이블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보도 좀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참고 하면 되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제 시간을 확보한 이후에 여유있게, 조금하게 하지 말고 이런 테이블을 표준화시켜서 잘 적용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영화관 운영인력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인력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1명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수탁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감으로 듣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래서 현재 운영인력에서 직원 1명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수탁운영자가 내년도에 또 수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인력체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수탁운영자가 올 경우에도 어쨌든 고용승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고용승계는 입찰공고 시에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영화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화관은 다른 문화시설과는 다르게 수입금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가산정할 때 수입금은 2억 7,500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 수입금이 3억 1,500이고 내년도의 경우에 이 수입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강선

수입금 관리를 지금 굳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수입금 관리의 경우에는 군에 승인을 받아서 수탁기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군시설로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이걸 왜 굳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극장의 경우에 지금 상영 일수를 늘리게 될 그럴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인력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강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시설로 어쨌든 위탁금으로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수익을 발생을 시키면 군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서 자체수입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금 영화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창출형이 아니고 수입금보전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수입에 대해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군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근거는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수입금보전형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위원장 이강선**

수입금보전형은 어떤 근거로 가능한 부분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수탁을 운영하는 위탁방식의 하나입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수입금보전형으로 지금 원가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이를테면 문헌서원을 예를 들자면 문헌서원의 교육관을 임대해서 교육관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죠. 그러면 교육관 사용료는 곧바로 군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헌서원 자체 운영단체, 수탁단체가 그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이 없죠. 그러면 미디어센터 영화관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영화 배급을 받고, 배급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강선**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위탁금으로 그것을 사오는 건데 영화를 사오는 건데, 사서 상영을 하고 그 관람료를 징수하고 그러면 그 관람료는 당연히 군수입으로 들어와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지금까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입금을 보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위탁을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여지껏 해 온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그 과정이 과연 적합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존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뭐 그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같이 여기에도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원가산출이 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과연 이게 적합한 수탁단체의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것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 중이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내 작은

영화관 운영현황이라든가 또 수탁기관과의 그러한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여기도 똑같이 향후 운영개선 관리계획안도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똑같은 방식의 관리계획안을 지금 제출하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 부분도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관 주도적이지 않고 어쨌든 민간 주도적으로 해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민간위탁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민간영역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민간이 좀 더 발전하고 역할을 강화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잡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역량강화교육의 경우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인 역량강화교육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굳이 과연 관 주도로 역량강화교육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일정부분 수탁기관과의 업무 개선을 위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량강화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 가는 중복 프로그램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가능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복합문화시설 뭐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어쨌든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개선 관리계획도 여기 미디어문화센터 향후 운영개선 관리계획안과 똑같이 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 시설을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또 이게 바로 굳이 주도적으로 수탁기관들을 관리를 하겠다, 통안에 넣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는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게 기벌포영화관의 영화료 인상안들에 대한 심의를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이렇게 조례에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 의미로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어쨌든 거기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절대 허용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이 운영위원회가 각 시설마다의 어떤 시설운영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요. 조례에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이상입니다.

홍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위원**

홍성희입니다.

소장님, 제적되는 직원 분이 어떤 분야에서 제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예.

**○홍성희 위원**

그런데 일례로 혹시 청소나 환경 분야에서 그동안에 직원분들 거기에 있으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단기간 근로자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관에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어르신들을 쓴다면. 그러면 일정부분 그 부분이 남을 수 있어요, 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

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김아진, 김원섭, 한경석, 이강선, 이지혜, 홍성희 (6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사회복지정책팀장	나정수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재무과장	홍경숙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은숙